탄 원 서

사건번호	2026고합541
죄 명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제 출 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께.

저는 피고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2024년 12월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닌, 이 사건의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민입니다. 사건의 모든 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특정 증언의 진위를 미리 판단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는 까닭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남긴 중대 사건일수록, 각 피고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가 다른 누구의 책임과도 혼동되지 않고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중대성과 국민이 느낀 불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의 고위 공직자였다면 그 지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사건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별개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각 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증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재판부께 김태효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2024년 12월 3일 밤과 4일 오전의 지시를 서로 구분하여 살펴 주십시오.

공개된 공판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54분 무렵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대통령의 대외 메시지 및 비상계엄 담화문을 주요 우방국에 전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문제 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과 함께, 기존의 외교·대외정책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단순한 의전상 통지라고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음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외교·안보 실무자가 외국 정부의 오해나 불필요한 외교적 혼란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사안별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초기 지시 당시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배경과 의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결국 당시 실제 대화와 보고 내용, 관계자들의 인식에 관한 증거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4일 오전 9시 무렵의 추가 설명 지시는 최초의 지시와 별도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계엄 해제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으므로, 두 시점을 한데 묶어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인식이 계속되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시각마다 피고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문구를 전달받았으며 무엇을 직접 결정했는지, 대외 소통에 어떤 직무상 필요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주십시오.

2. 실제로 전달된 메시지와 전달되지 않은 번역본을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건에는 성격과 전달 경로가 다른 여러 문서와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공개된 수사·공판 보도에는 일부 대외 메시지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절차를 거쳐 미국 측에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별도로 번역한 비상계엄 담화문은 외교부의 제지로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문서가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송·수신되었는지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의 전달이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달되지 않은 문서라고 하여 그 준비나 지시 행위가 당연히 아무런 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 송부와 송부 시도, 문서 작성과 번역, 상급자 지시의 전달과 독자적 판단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각각을 분리해야 실제 관여 정도, 행위의 결과, 피고인이 예상한 효과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께서는 메시지별 작성 시각과 최종 문안, 발신·접수 기록,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조치, 수신자와 실제 전달 시점을 차례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다른 관계자의 자율적인 조치가 어디에서 구분되는지도 함께 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측 설명을 함께 평가해 주십시오.

2026년 10월 6일 공판에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은 대외 메시지의 전달은 현실적으로 외교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경로를 피고인에게 확인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외교부에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전달 실무의 선택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과 긴장 관계에 있는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 증언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므로, 탄원인인 저도 외면하거나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교부를 통한 전달이 실무상 통상적이었다는 설명,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인 전달 경로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에 관한 기억, 실제 공무원들이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은 서로 다른 판단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만을 곧바로 부정하거나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당시의 통화·문자·업무 지시·보고 내역과 관계 공무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그 범위를 정밀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전달 방식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의 고의와 결과까지 모두 입증되는지는 각 죄명별로 별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판단에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식과 기여를 엄격히 구별해 주십시오.

형법 제87조 제2호는 내란의 모의·지휘 또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만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맡아 수행했는지, 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 관계를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군 병력 동원과 달리 외형상 폭력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대외적 지원이나 정당성 확보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의 중요임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메시지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나 피고인이 관련 지시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인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재판부께서는 해당 대외 소통이 폭동의 실행·유지 또는 그 목적 실현에 어떤 구체적인 기능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의도하였는지, 각 지시의 성격과 실제 효과가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 주십시오. 특히 최초 지시 당시의 인식과 계엄 해제 이후의 인식, 다른 관계자의 행위와 피고인 자신의 행위를 분명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피고인의 직책이나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증거로 확인된 개인의 행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5. 직권남용 혐의에서도 실제 권한과 상대방의 법적 의무를 개별적으로 살펴 주십시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지 업무상 지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직권 행사의 실질적 위법·부당성과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외교부 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직접 지휘권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실질적인 업무 관계, 피고인의 권한과 그 행사 방식,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부 공무원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것이 평소의 외교적 설명·협조 범위에 속했는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별도로 하게 된 것인지, 피고인의 권한 행사와 그 결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국가기관 간 공식적인 업무 협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공소사실의 범위와 계엄 종료 시점에 관한 다툼도 분명히 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공개된 공판준비기일 보도에 따르면, 특별검사 측은 계엄 해제 이후의 일부 행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계엄 해제 시점 이후에도 내란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는 피고인의 개별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적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탄원인인 저는 그 변경 신청이 최종적으로 허가되었는지, 확정된 공소사실의 범위가 현재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시점에 모든 형사책임이 당연히 끝났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께서는 현재 심판 대상이 된 공소사실의 범위와 행위별 발생 시점, 그때 존재했던 법적·사실적 상황을 구별하시고,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각 행위와 각 혐의의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도록 하고,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325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어떤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분노와 우려를 낳았을 때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형사재판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행한 모든 업무가 옳았다거나 그 판단이 언제나 적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외교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비판과,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일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그 차이를 객관적 자료와 법률에 따라 확인해 주시고, 불리한 정황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도 같은 증명의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부께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중대한 혼란을 겪었다는 이유로 누구든 그 책임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지만, 그 무게가 한 개인에게 증명되지 않은 형태로 더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김태효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당시의 인식, 각 지시의 전후 관계와 실제 결과를 독립적으로 살펴 주시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오직 법정에서 확인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내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한 시민의 간절한 요청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 소: _____

연 락 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 귀중